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1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박상설)

□ 제안이유

-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등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제정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수업 목적사용,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평일 강화훈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 대표팀 강화훈련,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운동장 없는 학교학생의 운동장 수업, 국가보훈대상자 단체 경기·행사, 시장기(배) 체육대회 등을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할 경우 전용사용료를 면제 하거나 감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와 노인, 3급이상 장애인 등의 개인연습 또는 학교운동부가 평일 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안제11조)

- 체육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일괄 100분의 50을 반환하였으나 취소시점에 따라 100분의 20 이상 전액을 차등 반환하도록 정함.(안제12조)
-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등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인조잔디구장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에 조기사용료를 신설하되,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규모별로 사용료를 정하며, 야구장은 3시간 단위로 조정함.(안별표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에서 주관하여 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 현행 규정상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임.
○ 체육시설을 운동장 없는 학교에 개방하는 시점 및 시간대는? - 조례에 명문화하지 않아도 되는가? - 가급적 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 주 3일이며 주간에만 개방할 계획임. - 향후 학교별 협의를 통해 필요시 명문화할 검토하겠음. - 적극 반영하겠음.
○ 인조잔디구장 라이트사용료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조례상 모순이 있어 별표2의 비고란에 ‘인조잔디 경기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 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0
의결 년월일	2007. 1. 23

제안년월일 : 2007년 1월 22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인조잔디구장 사용시 구장사용료와 라이트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 인조잔디경기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사용료를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동 조례안 별표 2의 전용사용료 비고란 하단에 ‘인조잔디 경기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 시설 사용료를 포함함’을 신설함.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의 전용사용료 비고란 하단에 ‘인조잔디 경기장의 야간사용료에 라이트 시설 사용료를 포함함’을 신설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동일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 의 하단 비고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사용료는 <u>주간사용료</u>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 징수하되, <u>종합운동장 주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함.</u> ○ 유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함. 	<p>[별표 2] 의 하단 비고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사용료는 <u>주간사용료</u> (<u>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제외</u>)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 징수하되, <u>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 야구장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함.</u> ○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별표 2] 의 하단 비고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인조잔디 경기장의 야간 사용료에 라이트시설 사용료를 포함함.</u>

[수정안포함]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라.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운동장 수업

바. 시장기(배) 체육대회

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행사
②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3의 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2.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3.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운동부 선수의 평일 연습경기

4.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 전액

나.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 100분의 80

다.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100분의 50

라. 사용개시 전일까지 : 100분의 20

제15조제2항중 “ 「지방재정법」 ”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으로 한다.

별표 1중 부천체육관의 보조운동장(1)(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조잔디구장	축구, 배구, 족구, 농구, 일반행사	”
보조운동장	축구, 족구, 씨름, 일반행사	”

별표 1의 원미운동장 다음에 성주산생활체육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주산 생활체육 공원	인조잔디 구장	육상, 축구, 족구, 농구, 인라인트랙	소사구 소사본동 산71번지
	테니스장	테니스	”

별표 1의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의 인조잔디구장란 다음에 파크골프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
-------	------	---

별표 1의 북부수자원생태공원란 다음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남부 수자원 생태공원	천연잔디 구장	축구, 일반행사	소사구 옥길동 산456-1번지
	풋살 경기장	풋살	”

별표 2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주잔디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천연잔디 구장	조기	300,000	500,000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별표 2중 부천체육관의 보조운동장(1)란을 삭제하고, 부천체육관의 사용

구분란중 “보조운동장(2)”를 “보조운동장”으로 한다.

별표 2중 북부수자원생태공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인조잔디구장	정규경기장 (100m×64m 이상)	조기	40,000	50,000		
		주간	60,000	80,000	150,000	200,000
		야간	160,000	180,000	250,000	300,000
	중경기장 (70m×45m 이상)	조기	30,000	40,000		
		주간	40,000	60,000	120,000	170,000
		야간	140,000	160,000	220,000	270,000
	소경기장 (70m×45m 미만)	조기	20,000	30,000		
		주간	30,000	40,000	100,000	150,000
		야간	130,000	140,000	200,000	250,000

별표 2의 비고란중 “주간사용료”를 “주간사용료(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제외)”로 하고, 동란중 “종합운동장 주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 야구장은 3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학교운동부 연습경기는 1회 당 5일 이내 한정”을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을 위한 무상사용은 대회별 5일 이내 한정”으로 하고, 동란에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인 이상 단체경기는 감면대상자가 경기구성원의 100분의 50 이상 참가할 경우 감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천체육관 인조

잔디구장 사용료는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될 때까지 종전의 보조경기장(1) 사용료를 적용한다.